

202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 가이드북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본 가이드북 내용은 '24년 1월 기준 내용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Part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01
Part 2	수출품목육성·발굴	07
Part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3
Part 4	통관 및 물류지원	17
Part 5	현지 유통망 개척	23
Part 6	수출 지원 자금융자	39
Part 7	참고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43

Part 0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01	농식품수출정보(KATI)	02p
02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03p
03	수출컨설팅	04p
04	현지화 지원	05p
05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06p

01 | 농식품수출정보(KATI)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지원내용 ■ 기본이용 카테고리

구분	서비스 내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스토리뉴스, 동영상 등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통관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식품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등
통계	월별, 국가별, 품목별, 기간별 수출입 통계정보

-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
- 시장분석/경쟁력분석 중 선택하여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무료 제공

이용방법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홈페이지 및 모바일 : www.kati.net
- SNS 채널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8KATI, (카카오 채널) kati

- **농식품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신청

**추진현황
및 계획**

- 글로벌 농식품 수출정보 실시간 제공
-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국가별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체대상 맞춤정보 지원

담당부서 ■ KATI 홈페이지 이용

수출푸드테크정보부(061-931-0879)

- **농식품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수출푸드테크정보부(061-931-0875)

02 |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를 매칭하여 거래알선을 추진하고 수출지원사업과 연계 해주는 온라인 상설 거래알선·홍보 사이트 역할 수행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신선·가공 모두 해당)

지원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홍보 채널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 해외바이어 RFQ 요청으로 거래 성립 시, 통역·화상상담 지원
- 해외바이어-수출업체 간 관심 품목 거래선 발굴 및 알선
- 가입 수출업체 미니홈피 공간 제공

■ 수출농식품에 대한 아카이브 역할 수행

- 농식품 수출업체·제품정보 해외바이어 소개용 홍보사이트 역할 수행
- aT 저작권 보유 이미지·영상 등 대국민 정보 공개로 콘텐츠 활용 지원
- 해외박람회, K-Food Fair 등 박람회의 온라인 전시관 제작 및 홍보 지원

지원기준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농식품 수출업체 모두 가능

모집시기 연중 상시 운영

신청방법 ■ 수출업체

-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trade.or.kr) 접속 ▶ 회원가입 ▶ 상품등록 ▶ 바이어 요청 시, 업체·제품 소개 및 알선

■ 해외바이어

-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trade.or.kr) 접속 ▶ 회원가입 ▶ 관심상품 RFQ·Inquiry 등록 등 수출업체 매칭 요청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1, 0987)

03 | 수출컨설팅

농식품 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내수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분야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자부담
해외 진출 컨설팅	- 전문 컨설팅사 연계 장기 컨설팅 (8개월이내) - 해외판로개척 (바이어 발굴, 거래알선, 해외 마케팅 등) - 물류효율화 (물류비 진단분석, 방안제시 등)	업체별 20~24백만원	5~20%
현장 코칭	- 전문위원 연계 단기 컨설팅(최대 7회) - 무역실무, 수출마케팅, 디자인개발, 법률상담, 수출물류 등	코칭 회당 최대 35만원 (최대 7회)	(기본) 무료 (심화)10만원
FTA특혜 관세 활용	- 관세사 연계 FTA활용 관세절감 컨설팅(최대 20회) -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취득 등 통한 관세 절감	최대 20회	무료

선정기준

매출액, 수출액 등 평가 후 적합 업체 선정

추진절차

모집공고(2월) ▶ 업체선정(2~3월) ▶ 사업추진 및 수시점검(3월~10월) ▶ 사업정산(12월)

* 현장코칭, FTA특혜관세 10월말까지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접속 ▶ 사업신청

담당부서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8, 0867)

04 |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수출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연간 수출업체 50백만원, 바이어 20백만원
- **지원방법**: 각국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대상지역**: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6개국(전문기관 121개소)

미주·중남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	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동북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중앙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 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튀르키예		

■ 지원내용

항목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 비율										
비관세장벽 현지 자문	•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												
	<table><tr><th>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tr><td>통관</td><td>수출 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능여부, 현지 제품분류 및 관세율</td></tr><tr><td>SPS</td><td>현지 식품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td></tr><tr><td>법률</td><td>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프랜차이즈 진출 등 법률자문</td></tr><tr><td>기타</td><td>현지어 표기방법, 할랄인증 관련 자문,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등</td></tr></table>			분야	지원(자문) 내용	통관	수출 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능여부, 현지 제품분류 및 관세율	SPS	현지 식품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프랜차이즈 진출 등 법률자문	기타	현지어 표기방법, 할랄인증 관련 자문,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등
	분야			지원(자문) 내용									
	통관			수출 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능여부, 현지 제품분류 및 관세율									
	SPS			현지 식품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프랜차이즈 진출 등 법률자문												
기타	현지어 표기방법, 할랄인증 관련 자문,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등												
• [특수] 무역분쟁 및 클레임, 美 FSVP 컨설팅,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등													
•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 (바이어) 현지 수입식품 등록비(베트남 식약처(VFA), 인도네시아 할랄인증(BPJPH) 등록 등)													
•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에틸렌옥사이드 식품검사 * 단, 국가별 검역 조치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바이어)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 * 바이어의 경우 해당제품 24년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수입등록- 검사		수출업체 및 바이어	80% (자부담 20%)										
라벨링 현지화	•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견본 제작·등록 지원 - 수출국 통관 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식품검사 포함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특허권 출원·갱신비용 지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사전검토(필요시) 후 상표권 출원·갱신 지원 - (특허권) 국내 특허권을 수출원한 수출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 * 포장디자인 특허신규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권 취득여부 관계없음	수출업체											
포장패키지	•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K-Food 로고 의무화) * 포장디자인 개신으로 인한 해당제품 24년 수출입 실적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바이어											
One-Stop 시험수출	• 중국, 베트남, 인니 등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현지 마케팅 등 시험수출 *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50만원 상당은 참가업체 지부(담당)	수출업체	100%										

* 현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 (현지화) 항목별 사업신청 등 필수서류 제출기업 (원스탑)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 **지원기간**: (현지화) 2월 ~ 예산소진시까지, (원스탑시험수출) 2월 중
- **모집공고**: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aT 홈페이지(at.or.kr), KATI(kati.net)
- **신청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단, 바이어 지원사업은 aT 해외지사 담당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담당부서

수출푸드테크정보부(061-931-0871, 0872, 0878)

05 |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농식품 수출업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전문가 육성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수출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지자체 수출 담당 공무원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교육명	① 농식품 수출마스터 교육		② 수출통합조직 운영 역량강화	③ 농식품 수출 지원역량 강화
교육 기간	3월 ~ 11월 중 1회		4월 및 8월 중 연2회	3월 ~ 11월 중 1회
교육 대상	농식품 수출 관련 종사자 수출에 관심있는 농식품 업체 임직원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직원 및 관리자 등	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교육 내용	무역 실무	무역절차, 서식·규범, 포장 및 라벨링, 검역·통관·인증 등	• 통합조직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예정 • 교육분야 : 수출농산물 품질관리, 수출물류, 예결산, 계약교육 등 • 자세한 교육내용은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 예정	• 농식품 수출진흥 정책 • 농식품 기초 무역실무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무역영어 등) 등 • aT수출지원사업 소개 • 자세한 교육내용은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 예정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온·오프라인), 주요 수출시장 진출전략 등		
	해외 연수	국제식품박람회 참관,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토론 수업	현장 문제점 토의 등		
교육 형태	합숙 / 비합숙 병행		1박 2일 개별숙박 (오프라인)	비합숙(온/오프라인)
교육 방법	교육생 모집 후 정기적 교육 진행		교육생 모집 후 단기 교육 진행(연 2회)	교육생 모집 후 단기 교육 진행(1회)
교육 인원	25명 내외		회당 35명 내외	25명 내외
지원 비율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100%

이용방법

-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접속 ▶ 회원가입 ▶ 해당 교육과정 신청
- 수출통합조직 운영 역량강화 과정은 별도모집

담당부서

농임산수출부(061-931-0844)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031-400-3568)

Part 02

수출품목 육성·발굴

06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08p
07	수출상품화 지원	09p
08	검역해소품목 지원	10p
09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11p
10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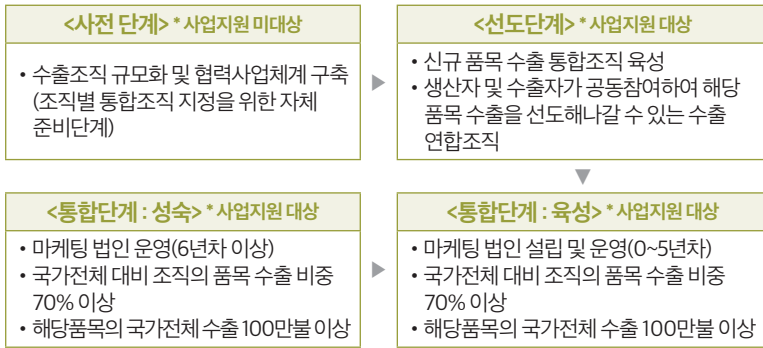
06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 전문 마케팅법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국내의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전국단위 수출능가 및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해당 품목의 국가 수출 선도 역할 수행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및 선도단계)으로 지정받은 조직



신청요건

- 생산자, 수출업체와 구속력 있는 3자간 출하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출 연합조직
- (통합단계) 해당 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이 100만불 이상이며, 국가 전체 대비 조직의 해당 품목 수출 비중 70% 이상인 조직

지원내용

■ 사업비 구성

- 공통사업비: 국고보조 80~100%, 자부담 20%(기반육성비만 해당)
- 중점사업비(통합단계 조직만 해당): 국고보조 100%
- 출하의무계약 인센티브(통합단계 조직만 해당): 국고보조 100%

■ 사업비 지원항목

- 기반육성: 조직운영 관련 및 분과 운영지원 등
- 마케팅: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행사, 바이어초청 상담회 등
- R&D: 신규 수출품/가공식품 개발, 수확 후 관리 연구, ESG사업 연구 등
- 품질개선 및 관리: 국산종자육성 및 보급, 자재구입 및 시설개선, 공동브랜드 홍보 등
- 물류개선: 물류 효율화, 공동물류 추진 등

진행절차

- (연속사업자) 운영실적 평가 ▶ 총사업비 배정 및 약정체결 ▶ 사업추진 및 정산
- (신규사업자) 신규조직(선도단계) 및 전환조직(통합단계) 모집공고(7~10월/3개월) ▶ 선정평가 ▶ 지정승인 ▶ 약정체결(at지역본부) ▶ 사업추진 및 정산
- *공사 홈페이지, KATI 등을 통해 공개모집 실시, 전환조직 모집은 선도단계 조직만 대상으로 함

담당부서

농임산물수출부(061-931-0822, 0824)

07 | 수출상품화 지원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 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지원비율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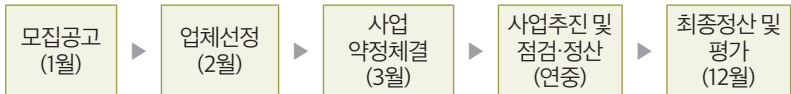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비 비용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2023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수산물·수산물가공식품 및 기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통합조직 품목 기준) 미가입업체는 지원제외

선정기준

- **선정절차**: 계량평가 ▶ 사업계획·해외지사 상품성 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평가가 대상업체 선정
- **사업계획평가**: 사업신청서 내 상품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해외지사 평가
 - * 선정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 사업 지원 신청

담당부서

식품수출부(061-931-0748, 0745)

08 | 검역해소품목 지원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 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

지원대상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 5백만불 미만인 품목/나라의 경우 우선 선정

지원분야

■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행사장 임차·설치비, 입점 수수료, 홍보·시식 관련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상품개선 : 포장 동판·금형 제작비용,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 일반규격에서 특화 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재작업 비용
- 현지 저온 운송비(해외지사):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내륙지역 냉동·냉장 유통비
 - * aT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거래알선비: 바이어 및 수출업체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 소비기반 조성 홍보(해외지사)

- 해당국 시장진입에 유익한 콘텐츠 또는 국가 이벤트를 연계한 매스미디어 또는 온라인, 모바일 매체를 통한 검역해소 품목 홍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기준

-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수입 바이어(해외지사), 국내 수출업체, 80~90%)
 - 가공 품목은 정산승인액의 80%, aT·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수출전략품목(인삼·김치·유자차·삼계탕 및 신선 부류 등)은 90% 지원
 - * aT 해외지사 주관 현지유통업체 직접 연계로 추진 시 집행비용의 100% 지원
- 소비기반 조성 홍보(해외지사, 100%)
 - 콘텐츠 제작·송출비, 이벤트 홍보비, 인플루언서 섭외비, 기타 운영비 등

모집시기

연 2회(상·하반기) * 필요시 수시 선정 가능

신청방법

aT 해외지사 및 국내공모*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실시

* 국내공모는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사업에 한함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농임산수출부(061-931-0844)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09 |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국내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정부인증 및 해외인증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브랜드 컨설팅	• (시장조사) 업체별 목표국가 품목 관련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전략수립) 수출브랜드 진단 및 핵심 마케팅 전략 실행방안 수립
브랜드 홍보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배너광고, SNS 홍보 등 • (미디어 마케팅) 옥외매체 광고, TV광고, 신문/잡지광고, 입간판 제작 등

■ **지원한도** : 1~2년차 최대 120백만원, 3년차 최대 100백만원

■ **지원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 80%, 중견 70%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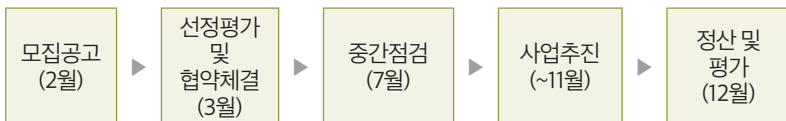
• 계량 평가(40점) : 수출성장성, 재무건전성 등 서류평가

• 비계량 평가(60점) : 사업이해도, 조직력 및 시장개척도, 브랜드경쟁력 등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대상 1.5배수 내·외에 한정 비계량평가(발표) 실시

진행절차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접속 ▶ 사업신청

담당부서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8)

10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도모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농식품(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 *임산물,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등 지원 제외
-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업체(신청형)

지원내용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사용(32개 사업메뉴)

*국고보조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중소기업), 80%(중견기업)

사업메뉴		
1. 수출컨설팅	12.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23. 마켓테스트
2. 수출전문인력 양성	13.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지원	24. 기획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3. 제품개발(기술도입)	14. 항만, 공항 부대비용	25. 온라인 수출상담회
4. 포장디자인 개발	15. 홍보컨텐츠 제작	26. 시장개척단
5. 지식재산권 확원	16. 현지시장조사	27. 법무·세무·회계 자문
6. 해외인증등록	17.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28. 통번역(수출용 자료)
7. 샘플통관운송	18. 개별바이어 초청	29.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8. 현지수입등록 및 검사지원	19. 유통업체 판촉	30.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9. 해외기업 신용조사	20. 온라인 판촉	31.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10. 물류효율화 비용	21. 미디어 홍보	32. 지사화 사업
11. 장기저장재 보급	22. 소비자 체험홍보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수출컨설팅, 해외인증등록은 aT 해당사업에서 정한 컨설팅 POOL 활용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선별비 지원단가표" 준용(지원단가 갱신시 자동 적용)

*사업메뉴가 공사의 타 사업과 중복인 경우 사업기간, 사업의무 등 제반사항은 모사업의 기준 준용(중복정산 불가)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지원기준

- (신청형) 최근 3년간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있는 업체
- (공모형) 최근 3년간 가중평균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수출업체

진행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추진	▶	성과점검
2월		2월		3월		~11월		11~12월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 (신청형) 모집공고 ▶ 신청업체 자동 선정
- (공모형) 모집공고 ▶ 1차 계량 평가 ▶ 2차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담당부서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2~34)

Part 0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14p
12	안전성관리	15p
13	선도유지제 지원	16p

11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지원내용

■ **조직화 지원** : 농가 인식개선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 지원한도 :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최대 32백만원

항목	세부지원내역
농가 인식개선	·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 품질, 검역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워크숍 참여 비용 ·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정보화	· 단지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고 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	· 단지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현장 컨설팅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묘구입(판매 목적 불가)
품질관리	· 단지 내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농가 점검·지도 등)
사례전파	· 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관리 등 소요 예산의 100% 지원

- 기준 : 2개년 평균 수출량 × 국가별·품목별 지원단가 × 최우수 7%, 우수 5%

항목	세부지원내역
안전성 강화	· 국내외 안전성 관련 워크숍 참여, 국내외 선진농업 사례조사 ·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 자재·천적 구매, 인증심사비 등
연구개발	· 재배기술 개발, 유통개선 기술 개발, 우수포장재 개발 등
생산관리	· 품질관리 인력 인건비, 생산품질 제고 연구개발비 · IT 등 효율화 시스템 구축 ·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자재 공동구입
유통개선	· 공동순회 차량 운영, 콜드체인 활용 물류운송 등 물류효율화 지원
공동선별비	·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담당부서

-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1, 0836)
- 지역본부 연락처

지사	연락처	지사	연락처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4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6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7	경남지역본부	055-608-5834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12 | 안전성관리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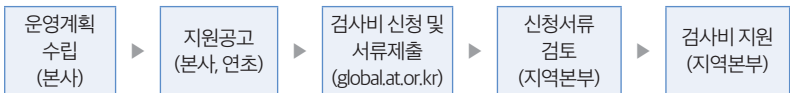
- 지원품목: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 (수산물, 임산물, 연조류 제외)
 -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품 등으로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50% 이상이 국산일 경우 지원
-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2024.1.1. ~ 2024.12.31. 검사성적분(통지일 기준) 지원
 - *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 단, 10.1~12.10 검사분은 12.13까지 신청가능하며, 12.11~12.31 검사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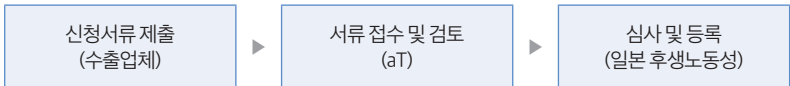
- 지원품목: 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협약의 및 현장 실사 등 행정 사항 지원
- 지원시기: 연중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담당부서

■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5)
- 각 관할지역본부(지역본부 연락처 참고)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도쿄지사(070-8287-3060), 식품수출부(061-931-0745)

13 | 선도유지제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2024.1.1. ~ 2024.12.31. 선적사용분 지원

*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1~12.15 선적사용분은 12.16까지 신청가능하며, 12.16~12.31 선적사용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6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켓)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홍보센터>광고>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global.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세부사용내역서, 구입증빙(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용증빙사진),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담당부서

• 수출성장지원부 : 061-931-0835, 0836

•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13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31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608-5832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7	제주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1			

Part 04

통관 및 물류지원

-
- | | | |
|----|--------------------|-----|
| 14 |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 18p |
| 15 | 수출보험지원 | 19p |
| 16 | 해외인증 등록지원 | 20p |
| 17 |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 21p |
| 18 |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 22p |

14 |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의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에 기여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별 10~80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보관)	냉동·냉장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폴필먼트) 이용료의 50%
	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유관기관 협업 창고 등)	이용료의 50%
	도코 복합물류센터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콜드체인 (저온운송)	저온 운송비용 (입항지→최종소비지)	이용료의 80%
온라인 폴필먼트 (신유통물류)	온라인물 주문품의 폴필먼트비용	이용료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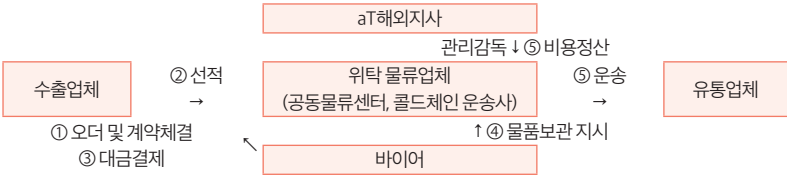
선정기준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이용절차



- 추진현황**
-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 ‘(23.12) 21개국 93개소
 - **콜드체인 운영 지원 국가** : ‘(23.12) 5개국 운영(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 신청방법**
- **참가신청** : 각 관할 해외지사
 - **모집시기** : 분기별 추진 *지사별 사정에 따라 시기 변동 가능

담당부서 신시장개척부(061-931-0963, 0964)

15 | 수출보험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구분	종목	지원비율	지원한도
환변동보험	일반형	가입보험료의 95%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옵선행(부분/완전보장)		
단기수출보험	일반 선적후	가입보험료의 90%	
	농수산물 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보험료의 100%	

- 추가지원 : 엔저현상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5%, 단기수출보험 10% 추가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는 예산소진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 aT는 분기별 또는 무역보험공사 요청 시 사업비 선급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자부담분(가입보험료 5~10%)에 한하여 납부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를 통해서 상시 모집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이행 협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온라인 제출)

담당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 : 1588-3884
- 농임산수출부 : 061-931-0825

16 |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 * 한식연, 지자체, 중기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지원불가
 - * 대규모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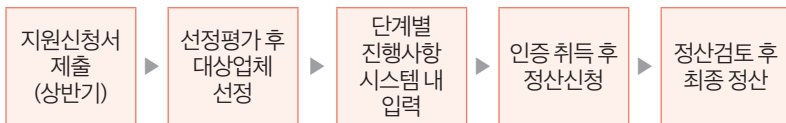
할랄(JAKIM, BPJPH,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최종 정산 확정금액)의 70%	• 인증취득비 - 심사비, 등록비 등 • 대행비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진행절차



*사업공고 : 정기(연1회)

신청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사):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지역본부):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운영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단계별 진행(신청·착수·정산)

담당부서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

17 |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신선농산물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기간까지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 지원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대기업 제외)

*24.9월까지 설치 완료 의무조건, 각종 인허가 필요사항 및 비용 등 자체 부담

사업내용

- (지원항목) 신선농산물 수확 후 CA보관 위한 ① CA저장고(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지원 및 ③ CA컨테이너 기체조성 위한 CA질소발생기(고정·이동식) 지원

*지원조건 : (국비) 70%, (자부담) 30%

- (컨설팅수행) 전문가가 선정업체 상황에 맞는 CA설비 공사 관련(방법, 기간, 금액 등) 컨설팅 제공

- (사업의무) 9월까지 CA유통 및 설비 구축 완료 / 11월까지 해당 설치 CA설비 활용 CA컨테이너 1대 수출의무 부여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및 설비 구축이 지연될 경우, aT측에 사전 통보 및 승인에 따라
기한 연장

CA수출 사업의무 미이행시 보조금 미정산 또는 환수 등 조치 시행

- (정산신청) CA유통시설(설비) 이용하여 CA컨테이너 1대 이상 수출 후 정산신청 가능하며, 수출한 달이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정산 신청

*11월은 11.30까지 수출 이행 완료 후, 12.5까지 정산신청

진행절차



신청방법

-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방법** : aT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공고문 기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및 운송서류(AWB, B/L) 등(필요시 추가요청)

담당부서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2~34)

18 |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국내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 수출업체(수·임산물, 대기업 제외)

신청자격

무역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직전년도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대기업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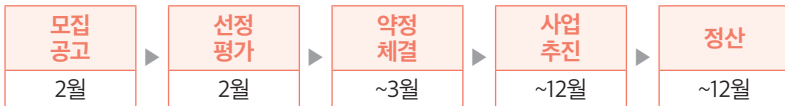
* 2023년 물류비 수혜이력이 없는 경우 수출화주 또는 수출대행자에 신청업체명 표시되고, 2023년에 수리된 수출신고필증 및 해당 건의 B/L 또는 AWB 사본 각 1부,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1부 제출 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임산물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신선도 유지 위한 시설·장비 임차 이용료 지원
*자가 시설 및 자가차량 이용 시 지원 불가
- 규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배정한도 차등 적용(국비 80%, 자부담 20%)

모집시기



신청방법

■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방법** : aT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공고문 기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및 운송서류(AWB, B/L) 등(필요시 추가요청)

담당부서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2~34)

Part 05

현지 유통망 개척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4p
20	Global K-Food Fair	28p
21	바이어 거래알선	29p
22	해외 안테나숍 설치지원	32p
23	해외 판촉행사 지원	33p
24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34p
25	온라인모바일마케팅	35p
26	K-브랜드 연계 한류 마케팅	36p
27	한국 농식품(K-Food) 로고	37p
28	한국 농식품 홍보관	38p

19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해외 식품 전문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한국관 내 1부스 제공 *체제비 등 직접 지원 없음

구 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박람회 참가 1회당 자부담 50만원 사전 납부 • (대기업*) 임차(기본비용 임차 포함) 및 장치비, 운송통관비 50%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원 항목	중소·중견기업	• 임차·장치비, 비품임차비, 온라인 등록·홍보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 홍보포스터 등 • 전시품 운송통관비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체제비는 지원 제외
기타		• 운송통관비/냉장(냉동) 비품임차비(24시간 전기료 지원 포함) - 신선농산물(350만원/1회 참가시), 가공식품(150만원/1회 참가시) • 사후 운송통관비(100만원/1개업체 당)

추진절차



추진연왕 및 계획

- 연 2회
- '24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2분기), '25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분기)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2, 0983, 0985, 0986)

<참고> '24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1	PROD EXPO	러시아/모스크바	2.5-9
2	GULFOOD	UAE/두바이	2.19-23
3	FOODEX	일본/도쿄	3.5-8
4	NPEW	미국/캘리포니아	3.14-16
5	Alimentaria	스페인/바르셀로나	3.18-21
6	FHA	싱가포르	4.23-26
7	APAS SHOW	브라질/상파울루	5.13-16
8	The Saudi Food Show	사우디/리야드	5.21-23
9	SIAL SHANGHAI	중국/상하이	5.28-30
10	THAIFEX	태국/방콕	5.28-6.1
11	Fancy Food Show	미국/뉴욕	6.23-25
12	Food Taipei	대만/타이베이	6.26-29
13	Food&Drinks Malaysia	말레이/쿠알라	7.2-4
14	FHI	인니/자카르타	7.23-26
15	WOFEX	필리핀/마닐라	7.31-8.3
16	Vietfood & Beverage	베트남/호치민	8.8-10
17	HKTDC Food Expo	중국/홍콩	8.15-17
18	Anuga Select India	인도/뭄바이	8.28-30
19	FFA	호주/멜버른	9.2-5
20	Asia Fruit Logistica	중국/홍콩	9.4-6
21	WFI	튀르키예/이stanbul	9.3-6
22	SIAL PARIS	프랑스/파리	10.19-23
23	FEQ	카자흐스탄/알마티	11.13-15
24	SIAL JAKARTA	인니/자카르타	11.13-16

* 위 참가계획은 '24.1월 기준이며 주최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지원한도	- 최대 600만원/1회 (지원비율 90%, 대기업* 50%)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원기간	(상반기) '23.12.1. ~ '24.7.31. 중 추진된 박람회 (하반기) '24.8.1. ~ '24.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온라인등록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비용 - 전시물품 운송·통관비 -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은 해당X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등 제재비는 미지원

추진절차



모집시기

- 연 2회
- '24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2분기), '25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분기)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2, 0983, 0988)

19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③ 개별박람회 참가지원(개별단체)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업 분야 관련 협·단체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역
지원한도	• 미주·유럽 1억원, 그 외 국가 7,000만원/1회 ※10개사 참가 기준 (지원비율 90%, 대기업* 50%)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원기간	• '23.12.1. ~ '24.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온라인등록비, 주최사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전시물품 운송·통관비 •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은 해당X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 협·단체 담당자(1인) 항공료, 숙박비 - 항공료 및 숙박비 aT 여비규정 준용

추진절차



모집시기

- 연 1회
- '25년 참가업체 모집(4분기)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2, 0983, 0988)

20 | Global K-Food Fair

해외 주요 수출 거점도시 내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행사를 접목한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네트워크 조성 및 현지 소비저변 확대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가공수산물 가능, 순수수산물 제외

지원내용

- B2B 수출상담회 참여지원
 - (사전) ①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지원
 - (현장) ① 출장항공비
 - ② B2C 연계 마켓테스트(분석 결과지, 샘플운송통관비 등)
 - (사후) ①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지원
 - ② 우수업체 사례집 발간

< 2024년 개최지역 및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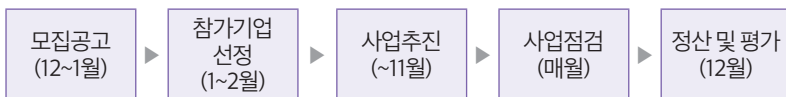
구분	미국 (뉴욕)	유럽 (리옹)	일본 (도쿄)	인니 (자카르타)	중남미 (멕시코 시티)	중화권 (광저우)	중동권 (두바이)	베트남 (호치민)
행사성격	B2B/ B2C	B2B/ B2C	B2B	B2B/ B2C	B2B/ B2C	B2B/ B2C	B2B	B2B/ B2C
행사시기	5월	6월	6월	7월	9월	9월	10월	10월
참가업체 (개사)	45	30	45	35	20	45	30	40

* 개최지역, 시기, 선정규모 등은 향후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희망 참가기업 모집 후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플랫폼 입점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가기업 선정

모집시기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8081/kfood>)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모집공고/신청 ▶ 신청서 작성

담당부서

마케팅지원부(061-931-0971, 0974, 0978)

※ 지원내용, 진행절차 등은 추후 변동 가능

21 | 바이어 거래알선

① 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해외 aT지사 추천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

지원대상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등)

지원내용

- (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
- (바이어)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상담부스, 통역비 등

지원절차



모집시기

모집시기 : 상반기(‘24.2월 예정), 하반기(‘24.9월 예정)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사업신청]-[모집공고/신청] ▶ 2024 K-Food 바이어 수출상담회(BKF) 참가업체 모집공고 ▶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1, 0984, 0987)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산물 수출업체,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사 초청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수출업체당 1명의 바이어 초청비(항공료 및 숙박비)의 80% 지원(250만원 한도)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실비
 - ※ 탑승월 대한항공 홈페이지 고시 국제선 왕복 직항 운임(일반석) 기준
 - 숙박비 : 100만원 이내 실비(최대 5박, 1박 20만원 한도)

추진절차



모집내용

■ 모집시기 : 2024년 1월(예정)

■ 모집요건

- (수출업체) 1개사 1회 신청 가능
 - ※ 수출업체 초청바이어가 중복될 경우 초청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우선 선정
- (정산 신청기한) 바이어 입국일 기준 4주 이내 결과보고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사업신청]-[모집공고/신청] ▶ 2024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모집공고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1, 0987)

21 | 바이어 거래알선

③ 온라인 바이어 알선사업(BMS)

글로벌 기업 DB활용하여 해외 농식품 바이어 리스트 및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수출업체 희망 국가의 바이어 정보, 신용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추진절차



모집내용 연중 상시 지원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사업신청]-[바이어 정보요청] ▶ 신청양식 작성 후 [신청]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1, 0984)

22 | 해외 안테나숍 설치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한국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해외 벤더 또는 국내 수출업체

*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출입액 5만불 이상 또는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공시 대상기업의 대기업 현지법인은 수입업체로 참여 가능

*** 수출업체는 해당국에서 안테나숍을 운영할 수 있는 현지벤더, 수입상 등과 공동참여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마케팅 등 운영 비용의 70~90%

• 종합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형태**

• (안테나숍) 주요 한국 농식품 전반 취급 / (KFZ) 한국 신선농산물 취급 전문 매장

• (팝업스토어) 사업기간 3개월 이하로, 테스트기회와 차년도 정규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구분	권역	연간 운영기간	운영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 (일반/KFZ)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 1년차 신규 안테나숍의 최소 사업기간은 3개월 이상, 2년차 이상은 최소 6개월 이상

** 팝업스토어 지원한도액(안) : 안테나숍 권역별 3개월 이상 기준 준용

선정기준

■ **신청대상** : 한국 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현지 벤더, 국내 수출업체

* 안테나숍·KFZ는 1월 중, 컨셉스토어는 3월 중 공고 예정

■ **모집국가** : 직전 3개년(21~23년) 평균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3억불 미만 국가

• 일반 안테나숍은 수출 3억불, KFZ는 10억불 미만 국가로 제한

■ **선정절차** : 사업공고, 선정평가, 현장실사, 최종 선정 후 결정

진행절차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	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	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 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	안테나숍 운영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	---	--	---	---	---	---

신청방법

- 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 수출업체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게시

담당부서

신시장개척부(061-931-0962)

23 | 해외판촉행사 지원

해외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한국식품 취급 수입 바이어, 유통업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 현지 수입 바이어가 aT 해외지사로 직접 신청

지원내용

- 해외 소비지에서의 홍보 및 판촉 활동 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콘텐츠 제작·광고, 현수막, 전단지, 배너 제작, SNS, 온라인 시식체험 등 판촉 행사 관련 홍보 비용
 - 판촉 시식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 비용 및 관련 소모품비 등
- 업체 스스로 제시하는 수입목표액 달성 필요(국고지원액의 최소 2~3배 이상)
 - 수입 목표액을 사업의무액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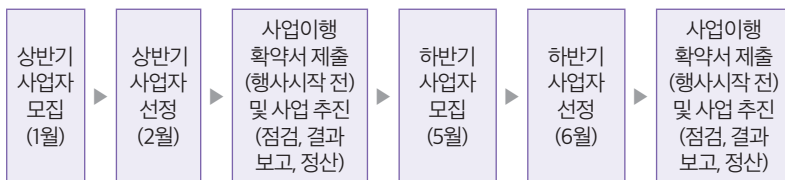
지원기준

- 지원한도 이내 행사 관련 실행비용의 80% 지원(온·오프라인 공통)
 - 일반 종합 판촉은 50백만원 한도 추진하되,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대규모 기획 판촉의 경우 최대 2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수출전략품목(신선부류,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단독판촉은 지원비율 90%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판촉은 지원비율 50%
 - 행사 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선정기준

- 평가항목
 - 행사효과 및 품목의 유망성, 수입업체 현황, 주관사 자체마케팅 추진여부 등

진행절차



모집시기

모집시기 : 매년 1월(상반기), 5월(하반기)

신청방법

global.at.or.kr 모집공고 ▶ 행사권역 aT 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신청주체 : 바이어)

담당부서

식품수출부(061-931-0744, 0746)

24 |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 여건 확보

지원대상

-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6개 권역 20개국에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권역	최우선 전략국가(5)	차순위 전략국가(15)
아시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대만
CIS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유럽	영국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멕시코	과테말라
기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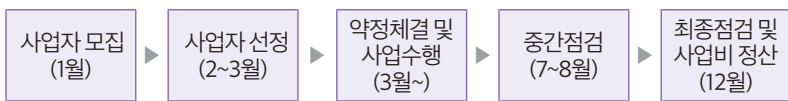
* 시장다변화 전략국가는 '24년 기준

지원내용

- 선정규모 : 58개사 내외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

구분	지원사항
시장개척 사업비	- 지원내용 : 해외영업, 수출인력 보조, 품목개선, 해외 마케팅 및 판촉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 지원한도 : 최대 20백만원 * 집행액의 80% /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체 제외
세일즈 로드쇼	- 지원내용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등의 B2B 행사와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현지인 품평회 등의 B2C 행사를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최우선 전략국가별 연중 1회 / 상반기 진행) * 수출상담, 샘플 발송비, 통역비, 항공비, 숙박비 등 지원
청년해외 개척단	- 지원내용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추진 청년인턴 지원 (aT에서 선발 후 수출업체에서 OJT 교육 실시) * 상황에 따라 해외 출국 불가 시, 수출업체 국내 파견 현장근무 추진

진행절차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사업신청 상단메뉴 [모집공고/신청] 클릭 ▶ “2024년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모집공고” 클릭 ▶ 해당 공고문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사업신청서 제출 ▶ 원패스시스템 로그인 ▶ 제출서류 목록 확인 후 체크박스 클릭 ▶ [서류발급 및 제출] 클릭 → 제출 완료 * 온라인 접수 원칙 : 우편 접수, 쿼, 택배, 방문 접수 불가

담당부서

신시장개척부 (061-931-0965, 0969)

25 | 온라인모바일마케팅

중소식품기업 대상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마케팅 비용, 인력,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중소 수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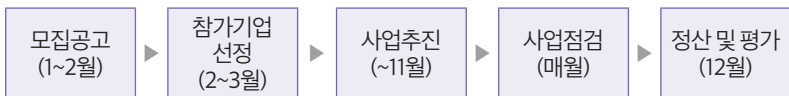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플랫폼 입점비	B2B 알리바바 GGS 가입비용, 아마존 Service Fee 등 플랫폼 계정 생성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일체
마케팅 홍보비	(플랫폼 광고) 온라인 오픈마켓 내 광고 집행비용
	(온라인 광고) 구글 및 글로벌 SNS 내 광고 집행비용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이미지 촬영,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 번역 비용 등
교육지원	입점 세미나, 온라인 수출 컨설팅 지원
온라인 전문인력 지원	중소 수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계정 운영 위한 업체 별 온라인 전문인력 매칭 지원

선정기준

희망 참가기업 모집 후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플랫폼 입점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가기업 선정

진행절차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담당부서

마케팅지원부(061-931-0972, 0977)

※ 지원내용, 진행절차 등은 추후 변동 가능

26 | K-브랜드 연계 한류마케팅 사업

문체부·콘진원 등 범부처, 기관 연계 한류 콘텐츠 내 한국농식품 간접광고(PPL) 및 콘텐츠 활용 2차 홍보 추진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중소 수출업체
 -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등록이 완료되거나,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 입점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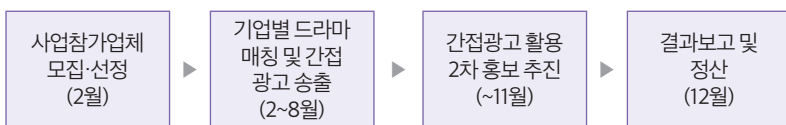
지원내용

단계	내용	주요 역할		
1단계	간접 광고	홍보포인트 확정	콘텐츠 매칭	콘텐츠 제작
		기업별 제품 소구 (홍보)포인트 확정	콘텐츠-홍보품목 (기업)간 매칭	촬영에 필요한 샘플 지원 후 콘텐츠제작
		수출기업	문체부	수출기업, 문체부
2단계	2차 홍보	홍보계획수립	사업운영	정산요청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기반 홍보계획 확정	제품별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사업정산요청
		수출기업	수출기업	수출기업

선정기준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사업적합성, 이해도, 홍보 역량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여기업 선정

진행절차



모집시기

매년 1~2월경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K-브랜드연계 한류마케팅 사업”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담당부서

마케팅지원부(061-931-0975,0976)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7 | 한국 농식품(K-Food) 로고

수출상품에 K-Food 로고()를 부착함으로써 한국산 농식품의 식별력 및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 강화

지원대상 농식품 생산(수출)업체

지원내용

- K-Food 로고(상표권) 사용권 부여
 - (적용품목) 한국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외)
 - (사용범위) 포장디자인 및 판매촉진·홍보용 기념품
 - (대상국가) 상표등록이 완료된 농식품 주요 수출국
 - * 대상국가는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수시 확인
 - (사용기한) 3년마다 갱신

선정기준 국내에서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이 증명*되는 한국산 농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 가능

*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서 등 한국산 농식품 증빙 서류 제출

진행절차

```
graph LR; A[로고 사용신청  
(수출업체)] --> B[로고 사용승인  
(aT)]; B --> C[로고 활용  
(수출업체)]; C --> D[사용현황관리  
(aT)]
```

모집시기 수시(제품별 신청)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사용신청 ▶ K-Food 로고 사용 신청

담당부서 식품수출부(061-931-0741, 0743)

28 | 한국 농식품 홍보관

인천공항 면세점 연계 수출 농식품 판매홍보관 운영을 통한 방한 외국인 대상 한국 우수 농식품 홍보,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 확대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지원내용

- 인천공항 면세점 내 수출 농식품 판매홍보관 운영을 통한 방한 외국인 대상 한국 우수 농식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면세점 입점 지원) 면세사업자와 aT 간 MOU 체결을 통해 설치한 판매홍보관 내 입점 및 판매 기회 제공
- (홍보 지원) 증정품 제공, 바우처 홍보 등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상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점상품 선정
- 선정협의회 구성 : aT, 면세점 담당자, 운영대행사 등
- 선정기준 : 면세점 판매적합성, 가격적정성, 상품디자인, 맛 등을 고려
* 면세점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에 따라 부진 제품은 교체될 수 있음



모집시기 수시(별도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농식품홍보관 지원 신청

담당부서 식품수출부(061-931-0742, 0749)

Part 06

수출 지원 자금용자

2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40p
30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41p

29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향후 변동가능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예산규모

‘24년 : 453,646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담당부서

금융법무부(061-931-1145)

30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0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20천\$ 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용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 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예산규모

'24년 : 4,600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담당부서

금융법무부(061-931-1145)

Part 07

참고

-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44p
 -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45p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찾아보기는 본 가이드북의 30건의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제도 명칭의 A-Z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제도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페이지
Global K-Food Fair	마케팅지원부	061-931-0971, 0974	28
검역해소품목 지원	농임산수출부	061-931-0844	10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푸드페어사업부	061-931-0982, 0983	24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8	1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1, 0836	14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2, 0833	12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금융법무부	061-931-1145	4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금융법무부	061-931-1145	40
농식품수출정보(KATI)	수출푸드테크정보부	061-931-0875, 0879	02
K-브랜드 연계 한류마케팅 사업	마케팅지원부	061-931-0975, 0976	36
바이어 거래알선	푸드페어사업부	061-931-0981, 0984	29
선도유지제 지원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5, 0836	16
수출보험지원	농임산수출부	061-931-0825	19
수출상품화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8, 0745	09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농임산수출부	061-931-0844	06
수출컨설팅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8, 0867	04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농임산수출부	061-931-0822, 0824	08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푸드페어사업부	061-931-0981, 0987	03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신시장개척부	061-931-0965, 0969	34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2, 0833	22
안전성관리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5	15
온라인모바일마케팅	마케팅지원부	061-931-0972, 0977	35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수출성장지원부	061-931-0832, 0833	21
한국 농식품 홍보관	식품수출부	061-931-0742, 0749	38
한국 농식품(K-Food) 로고	식품수출부	061-931-0741, 0743	37
해외 안테나숍 설치지원	신시장개척부	061-931-0962	32
해외 판촉행사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4, 0746	33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신시장개척부	061-931-0963, 0964	18
해외인증 등록지원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4	20
현지화 지원	수출푸드테크정보부	061-931-0871, 0872	05

참고 :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락처
서울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TEL 031-8060-6040 FAX 031-8010-1095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272-3012 FAX 032-712-272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920-1544 FAX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6 FAX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EL 042-389-5017 FAX 042-720-928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873 FAX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TEL 062-940-7015 FAX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218-4898 FAX 053-722-237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947-1086 FAX 051-719-963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608-5834 FAX 055-274-481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TEL 064-746-9472 FAX 064-800-8960

구 분		주 소	연락처
중·근·지 역·본·부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 北京市 朝陽區 廣順北大街 33號院 1 号楼 1单元 6层 603室)	E-Mail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1 FAX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 上海市 長寧區 婁山關路 83號 新虹橋 中心大廈 3201室)	E-Mail shanghaiat@at.or.kr TEL 86-21-3256-6325~7 FAX 86-21-3256-6328
	홍콩 지사	Room 1003, 10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hkatcenter@at.or.kr TEL 852-2588-1614~16 FAX 852-2588-1919
	다롄 지사	Room 1302, Xiwang Building, NO136 Zhongsha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116001 (大连市中山区中山路136号希望大厦1302号)	E-Mail dalianat@at.or.kr TEL 86-411-3960-3361 FAX 86-411-3960-3362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3 Baishaw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岛市 城阳区 流亭街道 白沙湾路3号 青岛爱特物 流有限公司)	E-Mail qingdao_logistics @at.or.kr TEL 86-532-6696-2229 FAX 86-532-6696-2181
일·본·지·역·본·부	도쿄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 F)	E-Mail tokyo@at.or.kr TEL 81-3-5367-6656, 6693~94 FAX 81-3-5367-6657
	오사카 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 1-8-15, 野村不動産大阪 B/D 8F)	E-Mail osaka@at.or.kr TEL 81-6-6260-7661 FAX 81-6-6260-7663

구 분		주 소	연락처
아 세 안 지 역 본 부	하노이 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hanoi@at.or.kr TEL 84-24-6282-2987, 2989 FAX 84-4-6282-2989
	호치민 지사	CJ Building, Floor 3, 2 Bis 4-6 Le Thanh To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E-Mail atcenterhcmc @gmail.com TEL 84-28-3822-7504 FAX 02-838-227-503
	자카르타 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jakarta@at.or.kr TEL 62-21-2995-9032~3 FAX 62-21-2995-9034
	방콕 지사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bangkok@at.or.kr TEL 66-2-611-2627~9 FAX 66-2611-2626
	쿠알라 룸프르 지사	Suite 6-04, 6th Floor, Menara Hap Seng,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E-Mail atcenterkl@at.or.kr TEL 60-3-2706-4299 FAX 60-3-2706-4301
미 주 지 역 본 부	뉴욕 지사	15 East 40th Street Suite 701 New york NY 10016	E-Mail newyork@at.or.kr TEL 1-212-889-2561 FAX 1-212-889-2560
	로스앤젤 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losangeles@at.or.kr TEL 1-562-809-8810 FAX 1-562-809-1191
	상파울루 지사	Av Paulista 1636, 10andar, #1008 - São Paulo CEP 01310-000	E-Mail saopaulo@at.or.kr TEL 55-11-3283-0089
	파리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paris@at.or.kr TEL 33-1-4108-6076~8 FAX 33-1-4108-2016
	두바이 지사	PO BOX 57528 Office #48, Sunset Mall, Jumeirah Beach Rd, Jumeira 3, Dubai, UAE	E-Mail dubai@at.or.kr TEL 971-4-339-2213 FAX 971-4-456-1155
	모스크바 지사	123610, Moscow,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12, 6th floor, 608 office	E-Mail atmoscow@at.or.kr TEL 7-924-007-1528

aT수출지원사업 **알림톡** 서비스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알림

" 원하는 관심 지원사업 공고 자동알림 제공 "

TALK



- 수출지원사업 공고 자동 알림
- 챗봇 사업 안내 및 검색 기능
- 모집공고 캘린더 제공 (D-day)
- 디지털 공사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매일 14시에 **신규 공고** 뿐만 아니라 **마감 임박 공고**가
카카오톡 **KATI** 채널을 통해 자동 알림 제공됩니다.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KATI농식품수출정보 를 친구추가 하세요!

구
독
방
법

1. KATI농식품수출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 하주세요.
2. 공고 알림을 원하시는 경우, 채널 대화방 하단의 **채널메뉴** 선택
"채널메뉴 → 사업알림설정"에서 관심사업을 등록!
3. 수출사업안내 및 사업가이드북 메뉴를 통해
공사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4. 캘린더 기능을 통해 사업공고 마감일정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QR코드 간편친구추가

구독자 한정!
로켓배송



202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